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5. 3. 16

나. 회부일자 : '95. 3. 16

3. 제안이유

- 「세계화」가 모든 국정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화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현재의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인 국제통상 및 교류를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4. 주요골자

- 당초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조례명을 "세계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전적인 세계화추진 체제를 안비코자 함.
- 위원회의 기능중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통상대책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과제에 대한 대처방안강구등 기능을 보강하고 구성인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세계화가 모든 국정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조례명칭 변경과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인 국제통상 및 교류를 추진하고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조례 제명과 제1조 (목적)중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를 "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 로 하고

둘째, 제2조 제2호와 제5호 및 제8호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하고

동조 제3호 "UR, GR등 국제통상대책에 관한 사항" 을 "세계무역기구(WTO)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 과제등 국제통상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셋째, 제3조 제1항중 "20인이내"를 "30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 "총괄반장"을 "담당계장"으로 하며

넷째, 제7조 제2항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는등

본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발전적인 세계화추진 체제를 완비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통상대책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 과제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6. 참 부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